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8. 3. 6 (목) 10:30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의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2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2월 25일

3. 제안 이유

-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및 「여성발전기본법」에서 정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·평가해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3조).

나.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범위를 정함(안 제5조).

- 1)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도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도지사는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).

라.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두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 규칙으로 정함(안 제7조).

마.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, 고충상담,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,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1조).

바.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

공하고 여성 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정함(안 제13조).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,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귀농 여성농어업인과 이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,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